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085
----------	-------

발의연월일 : 2025. 9. 17.

발 의 자 : 추경호 · 서일준 · 임종득
박덕흠 · 배준영 · 김선교
주진우 · 김상훈 · 김기현
김위상 · 권성동 · 권영진
박충권 · 윤한홍 · 서지영
김성원 · 인요한 · 정희용
조은희 · 최은석 · 나경원
김장겸 의원(2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손의료보험의 가입자 수는 의료비 경감의 필요성, 고급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상황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런데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상호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바, 실손의료보험의 본인부담 보장은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낮추는 기제로 작용하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을 증가시키고, 이는 결국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음. 반대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실손의료보험의 지급보험금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손의료보험

의 보험료는 꾸준히 인상되고 있음.

이에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적정화하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 정책을 실손보험상품에 관한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과 금융위원회가 필요한 협의·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운영 현황 및 상관관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2조 및 제110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경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사평가원 및 대행정구단체”를 “심사평가원, 대행정구단체나 제110조의2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 한다.

제1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0조의2(건강보험정책과 실손의료보험 정책과의 연계 관리를 위한 협의·조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정책을 개선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을 「보험업법」 제2조 제1호다목에 따른 제3보험상품(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지급하는 보험상품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실손의료보험”이라 한다)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금융위원회와 필요한 협의·조정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정책과 실손의료보험 정책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1.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각각 국민의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2.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및 요양급여 비용의 변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대상 및 의료급여 비용의 변화가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범위 및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에 미치는 영향
3. 건강보험 또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등의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
4.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납부 현황 및 보험금 지급 현황
5. 제44조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 지급 현황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공단
2. 심사평가원
3. 요양기관
4. 그 밖에 건강보험의 보험료나 보험급여 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조정 사항 외에 실손의료보험 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심사평가원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2조(정보의 유지 등) 공단, 심사평가원 및 대행정구단체에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종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 (생 략) <u><신 설></u>	제102조(정보의 유지 등) ---- 심사평가원, 대행정구단체나 제110조의2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1. 2. (현행과 같음) <u>제110조의2(건강보험정책과 실손의료보험 정책과의 연계 관리를 위한 협의·조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정책을 개선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을 「보험업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제3보험상품(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지급하는 보험상품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실손의료보험”이라 한다)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금융위원회와 필요한 협의·조정을 할 수 있다.</u>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 정책과 실손의료보험 정책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1.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각각 국민의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2.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및 요양급여 비용의 변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대상 및 의료급여 비용의 변화가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범위 및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에 미치는 영향
3. 건강보험 또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등의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
4.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납부 현황 및 보험금 지급 현황
5. 제44조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 지급 현황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공단

2. 심사평가원

3. 요양기관

4. 그 밖에 건강보험의 보험료나 보험급여 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조정 사항 외에 실손의료보험 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심
사평가원이나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에 위탁할 수 있다.